

# 축산물가격제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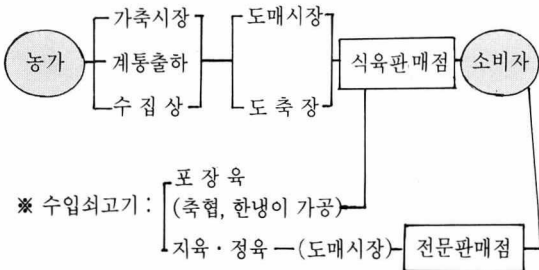


김 경 남  
(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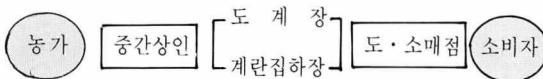
## 1. 축산물 유통현황 및 문제점

### 가. 축산물 유통체계

<소, 돼지>



<닭, 계란>



### 나. 축산물 유통시설의 영세 및 낙후

○ 유통시설 현황('89)

	가축시장	도매시장	도축장	도계장
전국 설치수	289개소	9	170	70
처리능력(1일)		우: 2,510두 돈: 13,440	7,859두 31,328	989천수
처리두수(1일)	우: 2,950	우: 636 돈: 14,556	1,254 16,865	365천수
가동율(%)		우: 25.3 돈: 108.3	16.0 53.8	36.9

### 다. 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미비

- 소, 돼지 및 양계산물의 주기적인 가격등락에 따른 대응수단미비
  - 가격진폭률: 소 26.5%, 돼지 47.1%, 육계 52.4%, 계란 37.2%
- 가격하락시 가격지지를 위한 구매자금 과다소요
  - '84~'87 소 구매실적: 284천두(2,088억원 소요)

### 라. 소비자가격 제도(연동가격제)의 경직성

- 산지, 도매시장 시세변동에 연동한 소비자가격 결정
    - 가격결정기준: 10일간 산지가격이  $\pm 3\%$  이상, 변동시 소비자가격 조정
      - 가격결정시점과의 차이
      - 결정절차의 경직성
      - 물가관리등 정책적으로 운영될 소지
- 연동가격 미준수 → 소비자 불만

### 마. 육류거래시 등급제가 아닌 관행에 의거 거래
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: 등급, 부위별 구분

없이 중량단위 거래

○계란 : 등급별 포장이 안된 상태의 산물거래

### 바.쇠고기 유통상의 부조리 성행

○물먹인 쇠고기 유통

-생우, 지육, 정육의 고기량을 늘릴 목적으로 강제급수 및 주수행위등

○수입쇠고기 둔갑판매

-국내산과 수입쇠고기의 가격차에 의한 둔갑 판매

-국내산('90. 10월 평균가격)5,736원/500g, 수입육(포장육 기준) 3,300(가격대비 58%)

### 사.도심지 도매시장까지 생축운반에 따른 유통의 비효율성

○장거리수송에 따른 감량 발생

○도매시장에서의 도축, 판매기능 병행추진으로 인한 문제발생

-도축폐수, 냄새, 소음공해, 교통혼잡등

○특히 서울도매시장의 경우 도축능력 부족

## 2. 개선 대책

### 가.주요 축산물(소, 돼지) 가격안정대 운영

○목 적

-축산물가격의 지속적 안정으로 양축농가의 소득보장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건 조성

○추진방향

-축산물가격 안정제도의 법제화

• 축산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·하반기 가격 고시

○도매시장의 축산물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범위

를 벗어날 경우 수매방출등 가격안정 배치

○'90가격안정대

○수매자금 확보 : ('90)909억원→('91)1,000억원(축진자금)

### 나.소비자가격 제도의 자율화

○목 적

-소비자 가격을 자율화하여 시장기능에 맡기므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

○추진방향

-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

• 연동가격 폐지→시장자유가격→부위 및 육질에 상응한 가격형성

• 법적조치 사항 : 쇠고기,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제도에 관한 규정(고시 88~24, '88. 9. 14)폐지

-수입육

• 지정가격→자유가격(고급육지(정))육은 개 가격 자율화 '90. 7. 30)

• 포장육은 현행표시 가격제 유지

### 다.육류도체 등급별 시행

○목 적

-육류(소, 돼지 도체) 품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거래하므로서 공정한 거래형성과 높은 등급육 생산을 위한 지표제공으로 가축개량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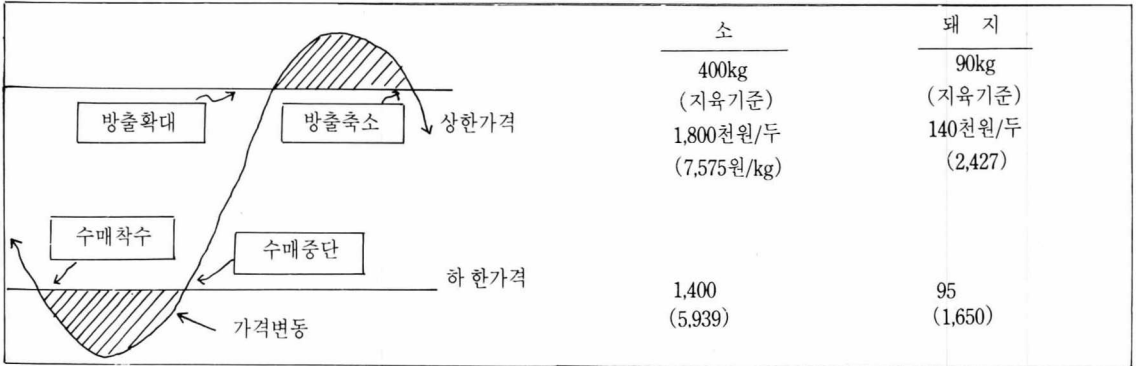
○추진방향

-등급시행방침 확정 : '90. 4. 11

-사업주체 : 한국종축개량협회

-등급검사체계 : 생축출하→도축→지육등급 표시→도매시장 상장→경매

○돼지도체 등급기준(안)



※ 산정방법: 과거7년간 농가평균 판매가격×생산비 증가율 (± 가격진폭률/2) (돼지의 경우 5년간 평균가격 적용)

- 등급구분: 4개등급(표시방법: A, B, C, D)
- 등급판정 기준: 도체중량, 등지방두께, 비육 상태, 고기의 조직감, 육면, 지방면 등
- 향후 추진계획
  - 등급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개정 (정기국회상정)
  - 축산법 개정후 등급기준 확정
  - 등급사 채용 및 교육 실시: '90. 11~'91. 2
  - 등급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: '90. 10~'91. 6(생산자, 유통업자, 소비자)
  - 모의등급업무 실시: '91. 3~6
  - 등급별 실시: '91. 7이후
    - 서울 3개도매시장→전국도매시장→특급 도축장

- 사업주관: 축협중앙회
- 재편정비계획: ('90)289→('94)128개소
- 소요액: 80억원(축협자금, 통·폐합에 따른 수익금 재투자)
- 2) 도축장 운영합리화
  - 목적
    - 도축장시설 근대화 및 부분육 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육류 유통보조개선에 기여
  - 추진방향
    - 유통권역에 따라 육성대상 도축장을 선정하여 식육유통센터화
    - 도축, 지육해체, 부분육처리시설등 집중지원
    - 사업주체: 시·도지사
  - 권역화계획: ('90)179→('97)65개소
  - 사업량 및 소요액

**라.유통시설 확충**

1) 가축시장 재편정비

- 목적
  - 가축시장을 산지 생축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여 양축가의 가축거래 편의증대
- 추진방향
  - 가축사육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고 농가편익을 고려하여 가축시장 통·폐합
  - 차량진입로, 상·하차 및 전천후시설·주차장등 출하농가의 이용 편의시설 확충

	사업량	단가	소요액		
			계	용자	자부담
도축장현대화	65	10	650	325	325
식육유통센터	65	10	650	325	325
계	130	20	1,300	650	650

3) 축산물공판장 증설

- 목적
  - 산지와 연계한 대소비지의 육류 공급시설 확충으로 육류 수급의 원활화도모

○추진방향

- 대도시 소비지와 연계하여 도당 1개소이상의 축산물공판장 설치
  - 생축유통을 지육, 부분육 공급체제로 점차 전환
- 사업주체 : 축협

○설치계획 : ('90)12→('97)19개소

○사업량 및 소요액('91~'97)

사업량	단 가	소 요 액			
		계	보 조	용 자	자부담
개소	억원	억원			
7	73	547	164	274	109

※ 공판장 설치지역을 시지역에서 시도지역으로 완화할 계획임.  
(농안법시행령 개정)

4)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

○목 적

-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육류의 수급조절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편의 증대

○추진방향

- 권역별(중부, 영남, 호남)부분육 가공공장 설치
  - 생축 유통을 지육, 부분육 유통으로 점진적 전환

-사업주체 : 축협, 민간, 유통단체

○사업량 및 소요액('91~'94)

사업량	단 가	소 요 액		
		계	용 자	자부담
개소	억원	억원		
3	90	270	216	54

5) 축산물가공업 육성

○목 적

- 축산물 수급기반 확충으로 양축 경영안정도 및 식품소비의 다양화와 질적 고급화 추

세에 대응

○추진방향

- 축산물 가공장 시설자금 지원
  - 부산물 가공처리시설, 종합 육가공장 시설 자금 지원등
- 육가공 및 처리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육가공계연원 설립지원
- 사업주관 : 축협, 민간육가공업체

6)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

○목 적

- 생산자단체가 직접 소비지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공정거래 형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에 보호

○추진방향

- 양축농가 및 가공업체가 생산한 축산물을 축협이 수탁 판매
- 축협에 각종 축산물을 종합판매할 수 있는 시설 지원
- 취급 축산물의 규격화, 상품화로 소비자 인식 제고
- 사업주관 및 기간 : 축협조합('90~'97)
- 설치지역 : 직할시 및 시지역내

○사업량 및 소요액

사업량	단 가	소 요 액		
		계	용 자	자부담
개소	억원	억원		
100	5	500	250	250

7) 축산물 보관 및 비축창고 증설

○목 적

- 수입쇠고기 도입물량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확보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보관 시설 확보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

○추진방향

- 비축시설 확보계획 : (현재)9,400→36,000M

/T

- 권역별(중부, 호남, 영남)비축창고 건설로 비축시설 균형화
- 비축기능 효율화를 위한 개재시설 이전 및 증축
- 사업주관 및 기간 : 농림수산부, 축협중앙회 ('91~'94)

○사업량 및 소요액

사업량	단 가	소 요 액		
		계	용 자	자부담
개소		억원		
5	-	578	578	

마.축산물 수출기반조성

○목 적

- 수출유망 축산물의 수출유도로 국내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급안정에 기여

○축산물 수출현황

		'87	'88	'89	'90.10
소	물량	2,302두	2,613	880	-
	금액	2,547천\$	3,676	1,631	-
돼지고기	물량	3,142톤	7,936	11,852	5,055
	금액	15,860천\$	41,705	57,585	26,680

○추진방향

- 수출시장의 철저한 조사 및 수출장애요인 제거
- 국내가격안정으로 지속적인 수출기반 확보
- 소(쇠고기)수출
  -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(축산시험장, 축협)
  - 수출업체의 규격우 생산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
  - 생우 수출에서 부분육 수출로 전환 유도

- 돼지고기

- 수출전용 가공처리시설 및 잔여육 처리자금 지원
- 돈육 품질향상(냉장육 수출) 및 위생처리
- 육류도체 등급제, 부위별 차등가격제 정착으로 고급육 생산 및 수출잔여육의 합리적 처분

○사업량 및 소요액('91~'97)

	사업량	단 가	소 요 액		
			계	용 자	자부담
소	3,500두	1,500천원	52	52	
돼 지	105,000M/T	200천원	210	210	
계			262	262	

바.부정축산물 유통근절

○목 적

-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보건 향상

○추진방향

- 축산물 검사원 증원으로 검사기능 강화
  - 검사원 증원 : 155명→312명
- 물먹인 쇠고기 유통근절
  - 육류 수분함량 검사기준 설정(한국식품개발연구원 용역중)
  - 강제급수 및 주수행위 단속규정 강화(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)
- 지육 관외반출규정 강화(농림수산부 고시 제90-46호 '90. 11. 2)
  - 물먹인 쇠고기등 부정육류 유통방지
  - 지급도축장 및 냉장(냉동)시설을 갖춘 1급도축장만 반출허용
  - 일정시간 계류후 도축하고 냉장후 반출
  - 식품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수송 및 도축검사 증명서 소지 의무화